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합53424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

담당변호사 성승용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 2020. 11. 11.

판결 선고 2020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,128,765원 및 그 중 614,127,770원에 대하여 2020. 3. 26.부터 2020. 7. 23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피고 주식회사 A과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)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김병철

판사정기상

판사선승혜

별지